

■ 홍콩한국국제학교 학칙 일부 개정 안내

1. 관련: 「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」

2)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, 소재국의 소재국의 여건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**10% 범위**에서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다.

2. 개정 내용: 학칙 제11조(수업일수)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1조(수업일수)</p> <p>연간 수업일수는 학교 행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으로 하되, 총 수업시수는 교육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업 시수 이상의 수업을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공관 및 교육부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수업일수)</p> <p>연간 수업일수는 학교 행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으로 하되, 총 수업시수는 교육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업 시수 이상의 수업을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공관 및 교육부에 신청하여 10%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/p>
<p>개정 사유 : 「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」 상위 지침 준수</p>	

■ 초등부 학생 생활규정 일부 개정 안내

1. 관련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5조, 제10조, 「동법 시행령」 제2조 적용

2. 개정 내용: 초등부 학생 생활규정 제22조 6항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안전지도)</p> <p>6. 등·하교시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관해서 모든 책임은 학생의 보호자가 진다.</p>	<p>제22조(안전지도)</p> <p>6. 안전한 등·하교를 위해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